

# [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]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7년 7월 5일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7년 7월 5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7년 7월 11일(제1차 총무위원회)
- 마. 의안번호 : 제2007 - 23호

## 2. 개정이유

행정자치부의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현실화 추진계획(2005.5.31.)에 따라 현재 5,000원인 주민세의 세율을 단계적, 연차적으로 10,000원으로 인상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 하고자 함

## 3. 주요골자

- 가.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5,000원을 10,000원으로 함(안 제21조)
- 나.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율 적용특례 :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예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세율을 8,000원으로 함(안 부칙 제2조)
- 다. 법제처의 “법령입안 심사기준” 개정예 따른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에 낫표(「」) 사용 및 목적조항의 특수문자 금지, 법률용어의 한글화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5조, 안 제10조, 안 제17조, 안 제25조제2항, 안 제34조,

안 제62조제1항·제2항, 안 제94조제1항, 안 제100조제2항)

#### 4. 검토보고 요지

- 동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2005. 5. 31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「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 현실화 추진계획」의 권고안에 따라 현재 5,000원으로 징수하고 있는 주민세를 단계적·연차적으로 10,000원으로 인상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- 우선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방세법 제176조(세율) 제1항에 의하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시장·군수가 10,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법령상 별다른 저촉사항은 없었음.
-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
  - 안 제1조(목적)에서는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면 목적규정에서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규정에 따라 정리된 것이며
  - 안 제2조는 종전의 제1조에서 사용하던 약칭을 목적규정 다음에 맨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사용 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고
  - 안 제5조, 제10조, 제17조는 “법령입안 심사기준”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에는 낫표(「」)를 사용토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며,
  - 안 제2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인의 세율을 5,000원 →10,000원으로 인상조정한 것은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하는

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고

- 안 제25조제2항, 제34조, 제62조제1항, 제2항, 제94조제1항, 제100조 제2항의 각호의 1 → 각 호의 어느하나로, 안 제94조제1항 날로부터 → 날부터로 표기한 것은 법률용어의 한글화에 따른 것이고
- 부칙 제2항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2008년까지는 8,000원으로 시행토록 적용특례를 둔 것은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갑자기 5,000원 → 10,000원으로 100% 인상함에 따른 조세 저항과 주민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, 입법예고 결과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음.
-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